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77호
- 나. 발 의 자 : 이종환 의원(찬성자 15명)
- 다. 발 의 일 : 2022년 8월 25일
- 라. 회 부 일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문화바우처 지급 근거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22. 9. 7. ~ 9. 11.)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3항은 「청년기본법」 1)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 「청년기본법」 제23조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청년기본법 :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이용권 지급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현행 조례 제11조는 이미 시장에게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 마련을 위한 이용권 지급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의 지원 방안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후속 조치가 동반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공약사항²⁾인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추진계획(안)〉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 ※ 시장 공약 - 서울시 모든 19세 청년에게 연간 30만원의 문화바우처 지급

□ 추진방향

- 만 19세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에 문화복지의 균형적 수혜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 생활비용 부담 완화 및 문화기본권 보장
- 기초 공연예술문화분야의 청년층의 관람확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실연무대 확대 및 공연예술분야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 확립
- 민선8기 정책기조(약자와의 동행, 하후상박 구조) 반영한 소득요건 적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의 문화권 향상 및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만 19세 청년(생애1회 지원)

사업연도	'23	'24	'25	'26
전체 인원*	83,511명('04년생)	76,343명('05년생)	71,746명('06년생)	75,123명('07년생)
중위소득 150% 이하**	61,297명	56,036명	52,662명	55,140명
수혜인원***	52,102명	47,631명	44,763명	46,869명

* 전체 인원 ('22.4월 통계청 기준) : 만 19세 서울 거주 국민 + 만 19세 서울시 등록 외국인

**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소득계층 인구비율
(2020년 기준 소득분배지표 적용, 통계청)

*** 수혜인원 : 통합문화이용권 최근 4개년 평균 수혜율(83.25%) 반영한 수혜율(85%) 기준 적용

- 지원분야 : 공연·전시 관람(미술, 클래식, 전통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등) ※ 대중음악 콘서트 제외
-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 문화바우처(카드) 지급

2) 시장 공약 - 서울시 모든 19세 청년에게 연간 30만원의 문화바우처 지급

-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청년정책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은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므로 만 19세 청년에게만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7호 생략)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매칭사업³⁾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⁴⁾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어, 수혜대상 청년들에게 중복지원이 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실적>

○ 계층 및 세대별 발급 및 이용현황

(단위: 천원, 매, %)

계층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발급매수	240,166매 (70%)	101,078매 (30%)
이용금액	20,603,454천원 (69%)	9,066,123천원 (31%)

3) 매칭사업 :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등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단체들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을 매칭해 벌이는 사업이며, 법령으로 지방재원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 이 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예산 재량권은 줄어듦. <출처:한국경제신문 경제용어사전>

4)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총사업비 : **49,689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비 31,892백만원(64%), 시비 17,797백만원(36%)]

세대별	아동·청소년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6세 이상 ~ 10대	20 ~ 30대	40 ~ 50대	60대 ~
발급매수	47,766매 (14%)	50,972매 (15%)	99,076매 (29%)	143,331매 (42%)
이용금액	3,154,969천원 (11%)	4,749,561천원 (16%)	9,777,530천원 (33%)	11,987,618천원 (40%)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제출자료

- 한편, 문화본부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지원대상이 각각 서울 거주 만 19세 청년과 서울 거주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차별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각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할 것임

구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청년문화패스
사업목적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 및 최저한의 문화생활 보장	청년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지원대상	서울 거주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50,570명 (중위소득 50% 이하)	서울 거주 만 19세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52,102명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22. 9월부터 11만원 지원)	1인당 20만원 ⇒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의 경우 60% 이상이 7만원 이상의 관람 비용 소요(출처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 일회성 관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20만원으로 책정
지원분야	문화, 체육, 관광 분야 ⇒ 도서, 교통 등 특정 분야 소비 편중 현상 나타남	문화예술분야 공연·전시 관람 지원 ⇒ 도서, 영화, 대중음악 콘서트 등을 제외하여 청년의 균형적인 문화소비 장려 및 공연예술 분야의 수요·공급 선순환 구조 확립 기대

담당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 고 은
-----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1.12월)
- ※ 국정과제 56번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 민선8기 시장공약 문화4-11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사업기간: 2022. 1 ~ 12.(카드발급일: '22.2.3. ~ 11.30.)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6세이상)

○ 목표인원: 450,507명

○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별 11만원권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발급

○ 추진방법: 서울문화재단 수행(문화체육관광부 주관처 지정)

○ 소요예산: 49,689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비 31,892백만원(64.18%), 시비 17,797백만원(35.81%)]

- 카드 발급예산: 49,556백만원(99.7%)[국비 64.4%, 시비 35.6%]

- 운영비: 133백만원(0.3%)[시비 100%]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자치구 (주민센터)
○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운영총괄 ○ 기금교부 ○ 시스템 관리	○ 지방비 매칭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집행률 관리	○ 사업비 집행 ○ 가맹점 관리 ○ 사업홍보 및 실적관리 등	○ 카드 발급 ○ 홍보 및 문자 발송 등

최근 주요 개선사항

- 22년도 문화누리카드 수혜율 100%로 상향, 지자체 합동평가 이용률 83%로 하향
(※ 21년도 목표: 수혜율 80%, 이용률 85%)
- 21년도 2월부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서비스 시작으로 가맹점 및 잔액실시간 확인
- 자동 재충전 기능도입(21년도)으로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충전
- 온라인 및 전화 사용처 지속 확대, 코로나 상황속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사용

구 분	2021	2022
지원대상	405,398명 (‘20.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449,191명 (‘21.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수혜인원	332,448명(82.0%)	450,507명(100.3%)
사업예산	33,398백만원(추경)	49,689백만원(추경)
개인별 지급액	10만원	11만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22.1~2월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22.2~12월
- 자동재충전 (1.17~21.(5일간)), 주민센터·온라인 신규발급 시작 (2.3.~)
- 지역주관처(서울문화재단) 현장점검 ’22. 10월
- 합동(문예위,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현장(가맹점 등) 점검 실시 · ’22. 11월
- 카드사업 종료 ’22. 12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3. 5월